

집합투자기구 공모주식 배정 기준

2005.03.24 제정
2005.09.30 개정
2007.09.11 개정
2009.02.04 개정
2012.07.27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① 이 기준은 회사의 집합투자기구에서 회사명의 또는 기타 통합계좌명으로 공모주식을 청약하고 그 결과를 배분함에 있어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공모주청약을 한 경우 주간증권사의 배정 수량대로 배분 한다.

제2장 공모주식 청약 및 배정

제2조(공모주식 수요예측 참여) ① 공모주식의 수요예측 참여 여부는 **주식운용본부장**이 관련 법규와 당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규약, 정관, 투자설명서 및 운용전략 등(이하 “관련법령”이라 한다)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② 공모주식의 수요예측 참여 가격은 **주식운용본부장**이 결정한다.

③ 공모주식의 수요예측 신청 수량은 각 집합투자기구별 순자산 총액의 10%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**주식운용본부장**이 결정한다. 다만, 각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의 크기, 주식편입가능비율, 운용방향이나 전략 및 주관증권사의 배정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.

제3조(공모주식 청약 및 배정의 원칙) ① **주식운용담당자**는 공모주식의 청약에 응할 집합투자기구 및 주식수를 당해 공모주식의 청약 이전에 확정, 내부 품의한 후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청약 하며, 관련 자료를 보관 하여야 한다.

② 회사의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공모주식 청약 주식수는 수요예측 참가 결과 배정 받은 당사의 청약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각 집합투자기구별 공모주식 청약 주식수는 배정 받은 주식수를 사전신청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변동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**주식운용본부장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**

④ 공모주 청약신청을 위한 집합투자기구별 배정내역은 **주식운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**

⑤ **주식운용담당자**는 **수요예측 참여 신청내역** 및 공모주식을 청약한 당일 집합투자기구별 공모주식 청약내역을 **준법감시인**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금지행위)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 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행위. 다만, **주식운용본부장과 준법감시인의 별도의 확인을 받은 경우**에는 제외 한다.

- ②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확약기간을 확인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확약기간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
- ③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·제출하는 행위
- ④ 그 밖에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

제5조(공시)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5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9년 2월 4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종전 간접투자기구 공모주식 배정 기준에 의해 결정된 사항들은 이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2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